



2025년 두번째

# 재정정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목 차

## 01

### CHAPTER

#### 재정분석



- 국민주권시대 주민 중심의 단계별 지방재정 전략과제 03
- 범(汎)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연구 05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08

## 02

### CHAPTER

#### 재정이슈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계획 및 실무대응 방향 13
-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향 16
-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19
- 기회발전특구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22
- 재정 뉴스 26

## 03

### CHAPTER

#### 재정정책



-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33
-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실효성 평가 35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37

'재정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에서 최근 중앙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국가·지방재정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04

CHAPTER

## 경제동향



정부 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43

정부 재정동향 - 기획재정부 44

NABO 산업동향&이슈 - 국회예산정책처 45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46

# 05

CHAPTER

##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49

세종시 주요 통계 52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55

01

## 재정분석

- ① 국민주권시대 주민 중심의 단계별 지방재정 전략과제
- ② 범(汎)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연구
- ③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 1. 국민주권시대 주민 중심의 단계별 지방재정 전략과제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Brief 제191호(2025.7)

-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세수 감소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 미래 지방재정의 전략 수립의 필요성

### ○ 지방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

-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개선하고 재원 배분 체계 재설계 필요

### ○ 현행 지방재정 제도 운용의 한계

- ▶ 중앙집권적 재원 배분과 사업 운영으로 주민자치와 자율성 강화에 한계를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과 중앙-지방 간 재정 구조 개선 필요

## □ 지방재정의 전략과제 방향

※ '25년 4월 한국지방재정학회 소속 전문가 38인 대상 '미래의 지방 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자율성 제고

- ▶ (지방세제도) '자율성' 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바,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한 국세 중심 구조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자율성 확대 필요

###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제고

- ▶ (지방재정조정제도\*) '형평성' 을 중심 가치로 보통교부세 확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 강화 필요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 지역 간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 조정 (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 (지방재정관리제도\*)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아닌 중앙부처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에 치중되어 있어, 이를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두는 제도 (예: 지방재정 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한도 설정, 주요재정사업평가, 재정분석·진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

## □ 지방재정의 단계별 발전 전략

### ○ (단기 과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등한 재정지원 확대

- ▶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법정전출금의 50%를 자치단체 자율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수도권-비수도권 교육재정격차 완화 및 주민 평생학습 지원
- ▶ (보통교부세 개선) 보통교부세 규모를 내국세의 25%까지 확대, 교부액 산정 시 낙후지역 등 특정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기준재정수입 차등산입률을 적용하여 지역 간 재정 형평성 강화
- ▶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법인기부제 도입 및 기부금 세제 감면 확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확대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

### ○ (중기 과제) 주민에 대한 책임성 높은 사업 활성화

- ▶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역화폐 연계 포괄보조금제 도입 및 성과협약제도 운영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재정 책임성 강화
  - ▶ (지방재정관리제도 책임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공시 내실화로 재정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실무위원회로 분리해 위상 강화, 중앙-지방 재정관계를 정립·관리하여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 \*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 (장기 과제) 조세 자율성을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재정민주화 실현

- ▶ (지방세 확충) 지방환경세(탄소중립세), 빙집세, 숙박세 등 신세원 발굴과 법정외세\* 도입, 지방소비세 독립세화, 자율적 감면제도 등 지방세입 확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 법정외세: 법으로 정해진 지방세목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정하여 주민에게 부과
- ▶ (납세자권리보호기능 강화) 주민소송제도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제도 실효성 확보, 행정 안전부에 ‘지방세납세자보호’ 직 신설

※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지방세기본법」 제77조)

## □ 시사점

- ▶ 세종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겠지만, 행정수도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읍·면과 동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시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세수 확보에 힘쓰고, 재정 사업 계획 시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시민 중심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함

## 2. 범(汎)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연구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2024.12)

- 시·도-교육청 간 재정운영 효율성과 자원배분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범(汎)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제안, 지방재정 여유재원의 통합적 운용 방향 모색

###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 ○ 시·도와 교육청의 재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 ▶ (시·도) '23년 말 기준 17개 시·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전체 세입예산 207조 7,324억 원의 약 5.8%인 11조 9,745억 원이며, 채무는 결산 기준으로 34조 7,865억 원임
- ▶ (교육청) '23년 말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전체 세입결산 (95조 2,994억 원)의 약 10.1%에 해당하는 9조 5,994억 원이며, 채무는 '22년 이후 미발생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요 >

- ◆ 목적: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통합적 관리
-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 내용: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통합계정: (재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 / (용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용도) 다른 회계로 전출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세입 증가 시기에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경기침체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평탄화 하는 효과를 기짐

### □ 범(汎)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의 쟁점

#### ○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

- ▶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운용 및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설치근거가 마련된 법정 기금은 아니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의 통합적 활용 가능성 연구·분석을 위한 임의의 제도임
- ▶ (필요성)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활용할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도와 교육청의 재정 이원화로 시·도에 비해 교육청의 재원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통합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 지방교육재정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가능성

- ▶ (여유재원의 범위) 교육비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통합적 활용을 고려해야 하며, 적어도 시·도 교육청에서 설치·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범위 내에서는 그 활용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 (여유재원의 실재(實在) 가능성) 시·도 교육감이 의무교육 운영과 자체 행정계획의 이행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의회의 통제를 거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적립하였다면, 이는 교육·학예 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재원으로 볼 수 있고,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음

## ○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주체 설정

- ▶ (제3자를 통한 운용) 시·도와 교육청이 사무별로 분리된 현행 제도하에서 범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시 책임 주체가 쟁점인바, 「지방재정법」의 ‘기금관리주체’라는 표현과 지역상생 발전기금 운용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정된 사례를 고려하면, 기금관리주체를 지방자치 단체장이 아닌 ‘두 집행기관 간 의사 조정이 가능한 독립된 제3자’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검토

### ○ 조례를 통한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원 공동발의로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조례로 마련
  -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교육과 재정이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없으면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제정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 법정기금으로서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2 신설을 통해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여유자금을 통합하는 기금 설치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

개정안(조항 신설)	법률로써 규정이 필요한 내용
<p>제16조의2(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p> <p>②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로 구성한다.</p> <p>④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그 외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설치근거</li> <li>- 관리·운용 주체의 설정, 운용 주체 결정의 구속성</li> <li>- 기금 운용의 위탁 근거</li> <li>- 기금의 재원 및 용도</li> <li>-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방법과 절차</li> <li>- 시행령 위임사항 등</li> </ul>

- **(관리·운용 주체)** 합의제 행정기관인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를 설치, 위원회가 법적·대외적으로 의사결정 권한과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 및 주민이 추천하는 자(전문가)로 구성, 다양한 의견수렴의 민주적 운영체계 마련
- **(재원)** 기존의 시·도와 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기금 적자 운용 금지, 높은 이자율 설정, 상환기한 제한 등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특정회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설계, 두 기금의 단기간 내 통합에 저항이 예상되므로 병존기간 고려 필요
- **(용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익확대나 적극적 투자에 사용 금지, 현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처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기금 사용 용도 제한

## □ 시사점

- ▶ 정부 세제 정책과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방재정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 모두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와 교육청은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 '23년 말 기준 세종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액은 4,128억 원이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 규모가 3,688억 원인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4,33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채무 없이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 시와 교육청 모두 세종 시민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두 집행기관의 재정 건전성은 서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운용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음

# 3.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TIP 제137호(2025.5)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지방세외수입 현황 및 특성

### ○ 개요 및 현황

- ▶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 구분 >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 ▶ '23년도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147.9조 원)의 22.8%(33.8조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임('14년도 23.4조 원 → '23년도 33.8조 원)
-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3년도에 84.2%로 최근 3년간 83~84%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9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 주요 특성

- ▶ 지방세외수입 근거 법령의 복잡성 및 징수 시스템의 미비

-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 개의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산별적으로 부과·징수되어 복잡하고 법령 간 체계성이 부족<sup>\*</sup>하며, 아직 지방세 수준으로 통일된 징수 시스템이나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함

\*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시 국세나 지방세 절차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과태료는 「질서행위위반법」 적용

- ▶ 지방세외수입 유형·성격의 다양성 및 관리 부서 산재

-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지니며, 부과·징수 책임이 여러 사업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종합적 관리가 어려움

#### ▶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심리적 반감 존재

- 지방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제재적 성격으로 인해 납부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 크고, 체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낮아 납부의식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며, 일부 체납자의 고의적인 납부 회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생계형 체납 등으로 징수가 어려움

####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저조 및 전문가 부족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연구의 필요성이 크지만, 낮은 관심과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심도 있는 연구나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움

### □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쟁점

#### ○ 조직 및 인력 관련 쟁점

##### ▶ 전담 조직과 부서 간 협력 문제

- 지방세외수입 전담 조직의 규모가 작고 사업부서와의 연계·협력이 미흡한데 더해, 세외수입 징수가 부차적 업무로 인식되면서 세외수입 부과 이후 독촉고지서 발송이나 체납처분, 정리 보류 등 후속 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 발생

##### ▶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

- 지방세외수입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되어 비전문 인력이 주로 배치되고 잣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숙련도와 인수인계가 부족해 징수율 저하와 총괄부서의 업무 과중을 초래

#### ○ 징수율 관련 쟁점

##### ▶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의 낮은 징수율

- '23년도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평균이 79.4%인 것에 비해 전년도 체납된 세외수입 당해연도 징수율은 21.2%로 저조하며,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큼(2.3%~82.9%)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은 사업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액 중 일반회계는 세정부서가, 기타특별회계는 사업부서가 관리하는 한편, 일부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두어 현년도 및 특별회계 체납액을 통합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기타특별회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 기타특별회계 지방세외수입의 평균 징수율은 80.3%로 일반회계(81.1%)와 비슷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고(22.0%~100.0%), 243개 자치단체 중 징수율 50% 미만이 26곳(10.7%)이며, 이 중 13곳은 40% 미만으로 세외수입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총괄조직 신설

-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년도 체납까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이 더 높음
-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어려울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악성·장기체납 공동 대응 등의 대안 모색이 필요함

### ▶ 업무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강화

-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규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오류 점검, 질의·요청 대응, 징수율 분석, 우수사례 수용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외수입 업무 기피 현상 해소 및 동기부여를 위해 개인 포상이나 인사 가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한 세심한 기준 마련도 요구됨

### ▶ 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징수율 제고 노력 유도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세외수입 관련 자체노력 항목을 강화<sup>\*</sup>하는 등 수단 마련, 세정부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 필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경상세외수입 확충에서 전체 세외수입 징수액 또는 징수율 향상으로 확대, 세외수입 체납액 평가 대상을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방안 검토

### ▶ 법제 개선사항 발굴 및 정비 지속, 연구 및 컨설팅 확대

-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지방세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요 세목과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내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 □ 시사점

- ▶ 세종시의 '24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2,120억 원으로 전체 세입(2조 2,558억 원)의 9.4%를 차지하며 징수율은 87.1%이나, '20년~'23년 증가추세이던 세외수입 징수액(1,598억 원→2,806억 원)과 징수율(92~94%대)이 모두 감소 및 하락함
- ▶ 그간 세종시는 지방자치단체 평균(80%대)보다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유지하며 세외수입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으나, '24년에 징수액과 징수율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02

## 재정이슈

- ①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계획 및 실무대응 방향
- ②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향
- ③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 ④ 기회발전특구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 ⑤ 재정 뉴스



# 1.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계획 및 실무대응 방향

출처 [나라살림보고서 2025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 이해하기](#)

- 2025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는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3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되며, 정량지표 중심의 경쟁이 강화됨. 특히 효율성 지표 신설과 투명성 축소 등 평가 체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대응을 넘는 제도 운영 내실화와 중장기적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 제도 개요 및 주요 변화 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를 실시 중이며, 2025년부터는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3등급 상대평가(우수 20%, 보통 60%, 개선 필요 20%) 방식으로 변경됨
- 평가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이며, 10~12월 중 평가를 거쳐 12월에 장관상 및 재정지원(3.8억 원)을 수여할 계획
- 정량지표(60%)와 정성지표(40%)의 혼합 방식으로 평가되며, 정량지표에는 효율성 항목이 신설(10점) 되었고, 투명성은 15점 → 10점으로 축소됨

## □ 평가 항목 및 지표 체계

### ○ 정량지표 평가 항목

항 목	세부 구성 및 비고
책임성(15점)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제안사업 공청회, 사업성 검토 현장방문, 환류방안 등 조례 · 운영계획 상 사회적 약자 참여, 집행 · 결산 과정 참여, 정보공개 등
투명성(10점)	기구 운영횟수, 예산편성 권한, 보완 과정 등
민주성(15점)	예산학교 운영, 전문가 활용, 외부협력, 다양한 홍보 등
전문성(10점)	주민e참여 시스템 개설, 제안 · 투표 · 결과공개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지표 신설
효율성(10점)	

※ 지자체 제출 실적서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등록

## ○ 정성지표

- 우수사례, 제도 특수성, 운영혁신 등 자유기술 중심
- 지자체의 제도 활용 역량과 창의성 평가

## ○ 우수 지자체 선정 방식

- 종합상 10개(최우수 4개, 우수 6개), 특별상 4개(청년, 교육, 생활안전 분야)
- 종합상은 정량 60% + 정성 40% 평가 결과로 선정

## □ 평가 준비 시 유의사항

### ○ 어려운 항목

- 투명성: 조례 및 운영계획 모두 정비 필요, 조문 미비시 불이익
- 효율성: 주민e참여 시스템 활용 여부 평가 신설 → 플랫폼 미도입 지자체는 불리

### ○ 핵심 준비과제

항 목	주요 대응 방안
책임성	운영계획 내 주민의견 수렴 명문화, 회의록 · 설문 확보, 제안사업 환류자료 정비
투명성	조례 개정 통한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조항 반영, 연도별 정보공개 항목 확대
민주성	기구 운영 실적 내실화, 분과위 · 협의회 운영 및 실링 공개자료 확보
전문성	예산학교 운영 다각화, 전문가 참여 확대, 협력기관 연계 운영사례 구축
효율성	주민e참여 플랫폼 기반 투표 · 제안 · 결과공개 체계 마련 및 정착 전략 필요

## □ 정량지표 주요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지표 설계의 일관성 부족) 2024년 대비 운영횟수, 교육시간 등 핵심 지표가 축소되어 실제 참여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어려움

→ 성과평가 지표의 연속성과 누적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항목에 대한 기준 유지를 검토할 필요

### ○ (평가 기준과 행안부 방향성 간 괴리) 예산 전 과정 참여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달리, 교육·운영 지표가 평가에서 후퇴함

→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도록 평가 지표를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재정렬 필요

- (e참여 시스템 강제 도입 유도 우려) 플랫폼 활용이 미흡한 지자체는 형식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 존재

→ 정량지표보다는 특별상 중심의 우수사례 발굴·확산 방식으로 유도 필요

## □ 성과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제안

- 코로나19 시기 완화된 기준이 관행으로 굳어지며 제도 운영 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운영횟수나 교육시간 등은 원래 기준으로 정상화할 필요 있음
- 평가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 지자체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대응에 부담이 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기준은 사전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 결과가 단순히 점수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사례 공유, 평가결과 분석 등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 □ 시사점

- 2025년 성과평가는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체계로 개편되며, 형식적 대응보다는 조례 개정, 운영 실적 내실화, 온라인 시스템 적정 활용 등 사전 준비가 관건임
- 특히 새로 신설된 효율성 지표(주민e참여 플랫폼)는 구조적 접근 없이 대응 시 지자체 부담이 크며, 단기적 평가 대비보다는 장기적 역량 측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2. 주거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향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 현행 주거복지제도는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자립과 통합지원을 지향해야 하나, 공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입주 이후의 실질적 정착과 자립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본 평가는 2020~2023년 추진된 주요 주거지원사업의 성과와 운영상 문제점을 종합 진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종합평가 개요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1개 주거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본 평가는 2020~2023년간 주요 사업의 실적과 효과성을 점검함
- 정량지표(입주율, 공가율, 만족도 등)와 정성지표(체감도, 사후관리, 정책 수용도 등)를 병행하여 사업의 총체적 실효성을 종합 분석함
- 평가결과는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 사업 유형 및 운영 현황

- 주거지원 사업은 크게 ①주택 공급형, ②주거비 지원형, ③주거환경 개선형으로 구분됨
  - 공급형: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지원형: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전세보증금 지원 등
  - 환경개선형: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거처 지원, 자활주택 리모델링 등
- 2023년 기준 약 226만명이 지원대상이며, 총 예산 6.1조원 규모로 운영됨
- 특히 청년, 고령층, 장애인, 쪽방 주민 등 대상군별 특화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도 확대 중임

## □ 주요 성과 및 문제점

### ○ 성과 분석

- ▶ 매입임대는 입주율이 95% 이상으로 안정적임
- ▶ 전세임대·행복주택은 공급물량 증가세가 빠르나, 수요-공급 불일치 및 입주 포기율 증가 문제가 병존함
- ▶ 주거급여는 만족도(86%)가 높으나, 주거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함
- ▶ 청년월세지원은 신청 급증, 기준 완화에 대한 수요가 높음

### ○ 핵심 문제점

- ▶ 공급형 공가 증가: 6개월 이상 장기 공가가 전체의 17%, 비수도권 중심
- ▶ 입주포기율 과다: 예비 입주자 30% 이상이 계약 포기 (3년 연속)
- ▶ 정보 단절 및 접근성 저하: 사업별 분절적 운영, 수요자 혼란 초래
- ▶ 부처 간 대상관리 이원화: 중복지원 또는 누락 우려
- ▶ 사후관리 미흡: 입주 이후 점검·상담·전환 지원 부족, 생활 인프라 부재

## □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제언

- 주거지원사업은 여전히 주거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입주 이후 자립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공급-입주-사후 관리 간 연계도 부족함. 자활·돌봄·복지 서비스와의 통합도 미흡함
- 공급형 유형 간 기준이 달라 수요자 혼란 발생함.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 임대 간 통합적 구조 개편 필요함. 유형 간 연계 미흡으로 중복 수요와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함
- 수요 기반이 아닌 공급 위주 정책이 공가 증가의 원인임. 지역 수요에 기반한 입지 선정 및 공급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함
- 입주자 자립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함. 정기점검, 장기공가 해소, 자격관리, 퇴거·전환지원 등 운영 전반에서의 관리 강화 필요함

-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집을 구하는 구조라 진입장벽이 큼. 반면 매입임대는 품질은 높지만 속도와 지역 편차 문제 있음.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편 요구됨
- 정보 접근성 낮음. 초기 상담창구가 부재하고 안내 체계도 분절됨. 수요자 이해도 높은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과 원스톱 창구 도입 필요함
- 주거정책은 궁극적으로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생애주기별 설계, 고용·복지 연계, 부처 간 협업 및 지자체 기획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 시사점

- 주거정책은 단순 공급에서 자립지원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공급형 사업 간 통합 운영 및 대상기준 정비로 수요자 혼란 해소해야 함
- 수요 기반 입지 선정과 지역 수요 대응 중심의 공급전략 마련 필요
- 사후관리 강화로 장기공가, 비자격 입주 등 운영 비효율 방지해야 함
- 정보접근성 개선과 원스톱 안내체계 마련 필요
- 정책 간 연계와 지자체 역량 강화로 실효성 높은 주거복지 달성을 가능

### 3.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 어떻게 풀어야 하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2025.6.26)

- 지방교육재정 제도 및 정책을 둘러싼 개편 논의 쟁점과 개선 요구를 분석하고, 주요국의 최근 동향에 기반하여 한국적 맥락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및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변동폭에 대한 쟁점

###### ▶ 내국세 연동 교부금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

- (내국세 요율을 낮추거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의견) 현재의 내국세 연동 교부금 확보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특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저성장 기조속에서 국가 채무는 확대되지만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양상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생 수 감소보다 학급 수와 학교 규모가 주는 영향이 크고, 교수학습방법의 대전환, 새로운 정책 수요 증대(늘봄,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 증가 등 현재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투자 필요

###### ▶ 지방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 경제상황의 변화(저성장과 감세 기조) 및 세수예측 오류 등에 기인하여 교부금 규모의 예측가능성 저하 및 불확실성이 증가함  
⇒ 인건비를 보수교부금으로 분리하여 세수 증감에 따른 영향을 낮추자는 의견  
⇒ 정부 간 재정조달 방식을 개편하자는 의견  
⇒ 지방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 ○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에 대한 논쟁

###### ▶ 초·중등교육 VS 고등교육

-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변화가 있었고, 더 증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 학생 구성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요 증가

- 학생 특성의 다변화는 더 많은 그리고 촘촘하고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함

○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책임에 대한 논쟁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성과 증명에 대한 요구

- 내국세 20.79%와 교육세의 일부가 법정 재원으로 확보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소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정 운용
-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구체적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

○ 확보 구조 및 제도 개편

▶ 정부 수준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지방교육재정의 예산 편성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로는 자체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가주도 교육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구조임  
⇒ 국가주도 교육사업의 비용 분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 외국의 경우 재원의 조달과 운용 책임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규정됨  
⇒ (미국) 연방정부는 특정 학생 선택적 지원,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일반학생 지원  
⇒ (일본) 설치자(기초자치단체, 시정촌) 부담주의 원칙, 다만 국가부담금 정해짐  
⇒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책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수교부금 분리

-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며 총 정원도 국가(행정안전부)가 관리함
-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0%에 달하며 연도별 인건비는 매년 2조 원 가량 증가를 보임  
⇒ 교원인건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분리하여 보수교부금으로 실수요를 반영하여 교부한다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은 그만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교육재정의 적정성(또는 충분성)에 대한 기준점 부재에 대한 문제 해결

-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논쟁이 침례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왜 현재 수준이 과잉투자인지, 또 왜 현재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최근 OECD 국가들의 초·중등교육 재정정책에 대한 동향은 형평성을 넘어 적정성 중심의 학교재정지원 방식을 도입·적용하고 있음

- 교육비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 기반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 규모를 검토해야 투자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

#### ▶ 배분 구조 및 제도 개편

-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는, 확보된 재원을 소진하는 방식의 예산 운용과 적정 규모가 아닌 실제 학교 및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 배분으로 인해 고비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 확보된 재원의 소진적 배분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과 같이 기준 단가 (표준교육비)를 설정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표준교육비 연구는 운영비 중심이며, 인적·물적 자원 배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 학생 특성 기반 교육수요 반영 필요

- 현재의 교육비 배분 방식은 학생 기준의 적재>Loading 방식이 아닌 분절적 방식으로, 특정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임

⇒ 학생 특성을 고려한 추가 교육비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앞서 논의한 표준 교육비 모델에 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 증거기반 성과 제고를 위한 배분제도 운영

- 지방교육재정 투자에 따른 교육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해야 함

⇒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 수준의 교육 성취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재정 배분 모델을 개선해 나가야 함

### □ 결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근본 전제는 성공적 학교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교육재정 정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여야 함
- 최근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는 성공적 학교교육에 대한 고민 없이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 증가만을 문제시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편은 적정수준의 교육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증거기반의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유효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활용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4. 기회발전특구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2025.3.5.)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소요에 대응해 지방 교육세 등 교육청 전출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 1차: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2차: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 □ 기회발전특구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내용

-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의무 폐지 등 사후 관리요건 완화
-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 □ 기회발전특구 지방재정소요와 교육청 여유재원 실태

### ▶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방세지출) 지특법상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지방세 지출에 따른 재정소요(세수감소) 발생
- (국세감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국세감면에 따라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교부세(정률분) 감소로 이어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방비 투입 발생
- (인프라 조성) 기회발전특구(대부분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필요
- (인력 양성 및 영유아 교육·돌봄 지원)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사업 및 입주기업 임직원 자녀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소요 발생

### ▶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경직적 재원이전 구조로 지방교육재정은 여유재원이 발생함

## □ 교육청 전출금 재원 활용 필요성 및 쟁점

### ▶ 기회발전특구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재정소요에 대한 재원 충당 방안 모색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음  
⇒ 특구 관련 보육·교육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교육청 전출금은 해당 용도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재원이라 보여짐
- 그러나 교육청 전출금 중 지방교육세(목적세)의 경우 그 세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방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해야 함

#### ▶ 지방교육세 재원 활용안의 단점

- 특정 세입을 특정 용도로 고정하는 방식은 경직적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만일 재원을 기회발전특구 관련 특정 분야 용도로만 사용토록 한정한다면, 기회발전 특구로 인한 재정소요 전체를 충당하기 어려움
- 재원마련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 여러 재정소요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회 발전특구를 위해서만 특정 교육청 이전재원을 선점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우선 순위 측면에서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 교육청 전출금 개선방안 논의

##### ▶ 1안: 지방교육세 일부를 기회발전특구 영유아보육 및 고등교육 용도로 전환

- 지방교육세 일부를 특구와 연계한 보육·교육 사업 용도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동 방안은 기회발전특구 연계 보육·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세입-세출 연계에 따른 경직적 예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 ▶ 2안: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 전체 영유아보육 및 고등교육 용도로 전환

- 기회발전특구라는 요건을 배제하고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영유아 보육 및 고등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 1안과 비교 시 예산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과 지방교육세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이점이 있으나,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안정성이 다소 낮다는 단점을 지님

##### ▶ 3안: 시·도세 전출금 법정률 조례조정

- 시·도세 전출금 법정률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 이를 활용해 시·도는 필요할 경우 전출금 법정률을 조례로 조정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 4안: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부

- 시·군·구에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거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시·도의 지방교육세 전출금에서 제하는 방안
- 그러나 징수교부금 교부는 징세비용을 감안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기회발전특구 재정소요 충당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추진이 어려움

▶ 5안: 지방교육세 조정 및 본세 통합

- 교육청 여유재원의 조정 및 기회발전특구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 세율을 인하하여 해당 부분을 본세로 통합하는 방안
-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재정소요만으로 이러한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무리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2안과 3안을 최종적인 교육청 전출금 개선방안으로 제시

▶ 즉,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 전체 보육·고등교육 지방비 용도로 전환(2안)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시·도세 전출금 법정률을 조정(3안)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

-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 전체 보육·고등교육 지방비 용도로 전환(2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보육·고등교육 용도로 전환하는 안(1안)과 비교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 그 적절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 시·도는 일반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세 전출금 법정률을 가감할 수 없어 교육청 전출금 규모의 경직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함(3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과 필요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재원을 축소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기회발전특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5. 재정 뉴스

---

- 2025년 1분기 지방세수입 동향 [행정안전부 2025. 5. 12.]
-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24조 1천억 원)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
  - ▶ 취득세 수입액은 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 2천억 원) 대비 5천억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26.7%로 전년 동기(24.9%) 대비 1.8%p 증가
  - ▶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 3천억 원) 대비 5천억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18.4%로 전년 동기(16.4%) 대비 2.0%p 증가
  - ▶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6천억 원) 대비 6천억원 증가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30.7%로 전년 동기(31.1%) 대비 0.4%p 감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40만원으로 확대 [세종특별자치시 2025. 5. 30.]
-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일반 시민은 6000만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임
- '25년 하반기 탄력세율 · 할당관세 운용방안 [기획재정부 2025. 6. 16.]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 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
  - \* 유류세 2개월,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6개월,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6개월
  - ▶ 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

###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8.31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경유△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 ▶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 행정안전부-시·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 [행정안전부 2025. 6. 17.]

-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
  - ▶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 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

#### □ 여름철 호우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 2025. 6. 19.]

-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긴급대책비 300.37억 원 긴급 교부
  - ▶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
  - ▶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

## □ 7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 2025. 6. 27.]

### ○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 ▶ 표면금리는 6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각각 0.500%, 0.675%씩 추가할 예정
- ▶ 이에 따라, 7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됨

## □ 하반기 510억원 규모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세종특별자치시 2025. 6. 29.]

### ○ 세종시, 7월부터 영세·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집중 지원 추진

- ▶ 기존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 외에도 초저금리자금, 충남신보 전환보증, 장기분할 상환자금, 비즈+ 카드보증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해 총 5개 금융지원 사업을 마련
- ▶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 하며, 1.75~2.0% 이자차액을 보전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며, 초저금리자금은 연매출 1억 400 만원 미만이면서 공실상가 입점, 임차인, 창업 3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융자를 2년간 연 4% 이차보전을 적용해 지원
- ▶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종신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지원도 실시

### ○ 8%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 상환 자금도 신설

- ▶ 장기분할 상환 자금은 최대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매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상환을 통해 연체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움
- ▶ 소상공인 비즈+ 카드보증은 1년 이상 영업했으면서 1,20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보증하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보증료와 연회비 면제, 3%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

## □ '25.5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2025. 6. 30.]

### ○ '25년 5월 국세수입은 30.1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7조원 증가하였으며, 양도세 해외 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 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소득세는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6조원 증가하였으며, '24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 0.5조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7조원 증가

\* 해외주식 거래액(억달러): ('23) 1,452 → ('24) 2,604

- ▶ 법인세는 '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4조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등으로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감소\*\* 등으로 △0.2조원 감소

\*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율(%): ('24.4) △25/△37 → ('25.4) △15/△23

\*\* 코스닥 거래대금(조원): ('24.4) 188.2 → ('25.4) 138.9

## □ 6월 소비자 물가 2.2% 상승 [기획재정부 2025. 7. 2.]

###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0% 상승

- ▶ '25.6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 상승 및 가공식품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2.2%(5월 1.9%) 상승.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0%(5월 2.0%) 상승. 생활물가는 석유류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2.5%(5월 2.3%) 상승했고, 신선식품 물가는 신선과실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비 △1.7%(5월 △5.0%) 하락

#### <'25.6월 주요 물가 지표>

(전년동월비, %)	총지수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25.5월 → 6월	1.9 → 2.2	2.0 → 2.0	2.3 → 2.4	2.3 → 2.5	△5.0 → △1.7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질 없는 지급 위해 국비 8조 1000억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 2025. 7. 14.]

### ○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비 8조 1,000억 원 지자체 교부

- ▶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총 12조 2,000억원 중 8조 1,000억 원을 7월 15일(화)에 신속히 교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크게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 □ 세종시 1기분 재산세 630억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 2025. 7. 14.]

### ○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

- ▶ 2025년 1기분 재산세 약 21만 7,000건에 해당하는 총 630억 원을 부과고지했으며,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일반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8억 원(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과세

## □ 세종시교육청,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 7. 14.]

### ○ 면밀한 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 ▶ 국·공유재산의 대장 정보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점유와 피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현장 실사를 함께 진행하여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
- ▶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 관사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보다 효율적인 관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

##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2025. 7. 17.]

###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억 원 지원

-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 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
- ▶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

## □ 세종시, 내년도 국비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 총력 [세종특별자치시 2025. 7. 17.]

### ○ 주요 핵심사업 당위성·대응논리 점검...예산편성 현황 공유

- ▶ 시의 주요 현안사업은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으로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는 한글·한류 문화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한 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03

## 재정정책

- ①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 ②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실효성 평가
- ③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1.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출처 나라살림보고서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보고

- 2024년 특별교부세 총 교부액은 1조 7,875억원으로, 이 중 재난안전 수요가 50%를 차지함. 전체 교부 구조가 재난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통합지원금 반복 수령, 배분 기준의 불투명성, 행정기획 역량 격차 등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제도의 목적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요구됨

## □ 제도 개요 및 운용 현황

-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3%를 기반으로 편성되며, ▲지역현안 ▲국가 지방협력 ▲재난안전 등 비정형 수요 대응 목적의 재원임
- 2024년 예산액은 1조 8,508억원, 실제 교부액은 1조 7,875억원이며, 재난안전(50%), 지역현안(40%), 국가지방협력(10%)으로 구성됨
- 최근 2년 연속 교부액이 감소했으며, 이는 내국세 수입 축소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 기인함

## □ 지역별 교부 실적 및 주요 특징

- 시도별 교부액 상위는 경북, 경기, 충남, 경남 등이며, 세종(131억원)은 최하위임
- 기초지자체 중 창원시(214억원), 청주시(207억원)는 통합지원금과 다건소액 전략으로 높은 교부액 확보. 반면, 과천시(18억원) 등은 규모와 건수 모두 제한적임
- 창원·청주는 자율통합지원금 연장을 통해 수년간 교부 혜택을 유지하고 있음

## □ 수요 유형별 구조 분석

- 국가지방협력 수요는 대부분 통합지원금 중심, 일부는 소액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으로 양극화됨

- 지역현안 수요는 창원시처럼 다건소액 분절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고단가 대형 현안 중심의 지자체와 대조됨
- 재난안전 수요는 여전히 복구 위주로 배분되고 있으며, 폭염·낙석 등 예방 중심 사업은 소규모에 그침

##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 ('특별' 기능의 약화) 통합지원금과 복구 중심 편성이 구조화되면서, 비정형 수요 대응이라는 설계 취지 퇴색
- (배분 전략의 격차) 기초지자체 간 행정기획 역량 차이가 교부 실적에 반영되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 (예방투자 비중 부족) 여전히 피해 복구가 교부 기준의 중심이며, 사전예방 인프라 투자 유인은 미흡함
- (배분 기준의 불투명성) 우선순위나 가중치 등 정량 기준 없이 정성 평가 중심으로 운영됨

## □ 제도 개선 방향

- 배분 기준 및 우선순위는 사전에 명확히 공표해야 함. 현행과 같은 불투명한 배분 방식은 수요 예측과 대응을 어렵게 하므로, 정량·정성 지표에 기반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
-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는 현재 복구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피해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정 방향을 조정
- 시군자율통합지원금이 10년 이상 반복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 기획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 제도 지원이 요구됨
- 특별교부세가 일반적인 보조금이나 경상 예산처럼 상시적 재정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일반재원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특별재원으로서의 목적성과 기능을 회복할 필요 있음

## 2.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실효성 평가

출처 나라살림보고서 2024결산 첫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실효성 있으려면

-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나, 다수 지자체가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계획적 활용과 구조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용계획의 구체성 강화, 본예산 반영 확대, 발생 원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 제도 개요 및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6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개정하고, 2025회계연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항목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축적, 목적 외 사용, 관리 소홀 등에 대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개선 조치임

### □ 지자체 이행 현황 및 반영 실태

- 결산기준 개정안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5개 지방자치단체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2개 지자체(80%)가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 항목을 결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다음연도 재원 활용"이라는 포괄적 문구만을 기재하는 데 그쳐,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냄

### □ 주요 쟁점

#### ○ 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 ▶ 이번 개정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은 기존의 임의 작성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 작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됨

-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작성 양식이 ‘채무상환’, ‘기금 적립’, ‘다음연도 재원 활용’의 3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계획의 실질적 타당성과 구체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함

### ○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와 구조적 시사점

- ▶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34.7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에도 전국적으로 25.2조원에 달하며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 이는 지자체 평균 1,037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특히 군 단위에서는 본예산 세입 대비 약 15%에 달해 연도 간 재정 격차 및 예산 구조 왜곡의 요인으로 될 수 있음
- ▶ 따라서 제도적 대응은 단순한 법제화에 그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함께 활용계획의 실질화가 병행되어야 함

## □ 개선방향

### ○ 단순 명시가 아닌 사용 대상, 활용 시기, 편성 비중 등을 구체화

- ▶ 채무상환은 실제 채무규모와 연계해 서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별 적립 계획을 분리 기재

### ○ 순세계잉여금의 인식 시점을 추경 이후가 아닌 본예산 시점으로

- ▶ 결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추계를 통해 본예산 반영이 가능 하므로 전액 추경 반영 관행 지양

### ○ 잉여금 발생 원인(불용액, 세입 과다)의 구조적 개선 선행

- ▶ 재정운영 과정의 현실화, 예산설계의 계획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음

### 3.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2025.6.30)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를 분석하고 향후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편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가지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개요

###### ▶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와 인건비 부족

-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05개(43.2%)임
  -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9개(20.2%)임
- ⇒ 중앙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통제하고 있음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의 도입 및 근거

- (도입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 관리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 방지 및 일정 수준의 인건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 인건비를 산정한 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함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의 연혁

- (1988년)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기준정원 제도” 도입
- (1994년) 인력 관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제도” 도입
- (2007년)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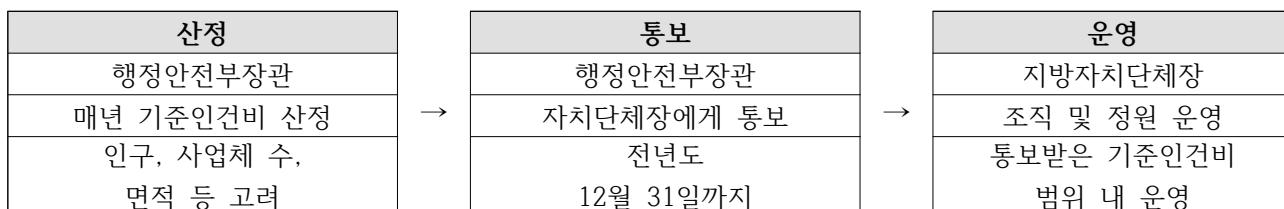
※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를 동시에 제한하여 조직 운영에 상대적 제약 有

- (2014년)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인건비 총액 기준만 산정·통보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의 운영

### ▶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및 통보

[기준인건비 제도의 운영]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

-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산정에 행정수요 지표 9개를 활용하나 어떻게 활용해 기준인건비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비공개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행정수요 지표	주민등록 인구, 65세 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록 외국인 수, 등록 장애인 수, 사업체 수, 자동차 등록대수, 면적, 농경지 면적
------------	---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운영실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을 통제함  
⇒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2022. 10. 31.) ,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폐널티 제도\* 재도입

\* 기준인건비 절감액이 발생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기준인건비 초과액이 발생하면 초과한 인건비만큼 보통교부세를 감액

## □ 외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제도

구분	영국	일본	우리나라
중앙정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 보조금(block grant) 지원 有</li> <li>▫ 지원자 역할</li> <li>▫ 인건비 집행 개입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 지원 有</li> <li>▫ 지원자 역할</li> <li>▫ 인건비 집행 개입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부세 지원 有</li> <li>▫ 지방과 중앙의 책임 분담</li> <li>▫ 기준인건비 산정·통보를 통한 일률적 통제 및 폐널티 적용</li> </ul>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지방의회 통제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인건비·정원 데이터 공개</li> <li>▫ 주민·지방의회의 비교·감시·통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인건비 정보 일부 공개</li> <li>▫ 주민·지방의회의 통제 부족</li> </ul>

구분	영국	일본	우리나라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 자율성과 책임성 높음	▣ 자율성과 책임성 높음	▣ 자율성과 책임성 낮음
	▣ 지방정부가 지방예산법위내 에서 인건비 집행하고 책임	▣ 자율·공개·경쟁으로 지방정부가 인건비 결정·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집행
소결	▣ 지방세 세수입이 적고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지만,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감시·통제 강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필요 ▣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정보 공개 필요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는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가 없음
- ▶ 중앙정부가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근거 규정 및 산정 방식 불명확, 기준인건비 세부 내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제공,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운영실태 공개 부족
- ▶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기준인건비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소속 지방 공무원 인건비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지 못함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과제

- ▶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훈령·예규·고시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을 공개하며,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인건비 세부내역을 제공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 정보를 정부 웹사이트에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함
- ▶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인건비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 시사점

- ▶ 2014년 도입된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지방공무원 인력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해왔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지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이는 지방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임



# 04

## 경제동향

### ① 정부 경제동향

- ▶ 내수 회복이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지속
- ▶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 ② 정부 재정동향

- ▶ 5월 누계 총수입 279.8조원, 진도율 42.9%

### ③ NABO 산업동향&이슈

- ▶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 건설경기 침체, 서비스업 회복 지연
- ▶ 성장세 둔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일부 품목 수출 감소

### ④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 ▶ 5월중 투자 및 수출 부진
- ▶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 둔화, 소비 양호



# 1. 정부 경제동향

출처 기획재정부, 7월 최근 경제동향

##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

- ▶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
- ▶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8조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7.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

## □ '25.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감소, 소매판매 보합

- ▶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0.9%, 전년동월비 0.2%), 서비스업(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0%), 건설업(전월비 △3.9%, 전년동월비 △20.8%)에서 감소하여 전산업 생산(전월비 △1.1%, 전년동월비 △0.8%) 감소
-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0.0%, 전년동월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비 △4.7%, 전년동월비 7.5%) 및 건설투자(전월비 △3.9%, 전년동월비 △20.8%) 감소
- ▶ 소비자심리<25.6월 CSI 108.7(전월비 6.9p)> 상승,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CBSI '25.6월 90.2(전월비 △0.5p)>, 전망<전산업 CBSI '25.6월 89.4(전월비 △0.1p)> 모두 하락
- ▶ '25.5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순환변동치) 하락(전월대비 각각 △0.4p, △0.1p)

## □ '25.6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물가는 상승폭 확대

- ▶ '25.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3만명 증가('25.5월 24.5만명 → 6월 18.3만명),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 '25.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상승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25.5월 1.9% → 6월 2.2%),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

## □ '25.6월 중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

- ▶ '25.6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 2. 정부 재정동향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 □ 5월 누계 총수입은 279.8조원, 진도율은 42.9%

▶ (국세수입) '25.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3조원 증가

- '24년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14.1조원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6.2조원 증가,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triangle 0.4$ 조원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에 따른 교통세 0.8조원 증가,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권거래세  $\triangle 1$ 조원 감소

▶ (세외수입) 5월 누계 세외수입은 17.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증가

▶ (기금수입) 5월 누계 기금수입은 90.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triangle 3.3$ 조원 감소

### □ 5월 누계 총지출은 315.3조원, 진도율은 45.9%

### □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triangle 35.5$ 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triangle 54.2$ 조원 적자

### □ '25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9조원 증가한 1,217.8조원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72.0조원(발행 100.7조원, 상환 28.7조원), 외평채 잔액 5.7조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triangle 1.1$ 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6조원 순증

### □ '25.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8조원[경쟁입찰 기준 19.0조원]

▶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23.8조원, 6월 조달금리는 2.64%로 전월(2.47%) 대비 상승 하였으며, 응찰률은 251%로 전월(257%)과 유사한 수준

▶ 6월 외국인 국고채는 대규모 만기도래(10.1조원) 영향 등으로  $\triangle 0.5$ 조원 순유출

### 3. NABO 산업동향&이슈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산업동향&이슈 (제76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 건설경기 침체, 서비스업의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감소
- 4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전월대비 0.8% 감소
  -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2월) 1.2 → (3월) 0.9 → (4월) 0.4
  -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2월) 0.7 → (3월) 0.9 → (4월) -0.8
-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전월대비 0.9% 감소
  -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2월) 6.5 → (3월) 4.7 → (4월) 5.2
  -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2월) 0.5 → (3월) 3.1 → (4월) -0.9
-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전월대비 0.1% 감소
  -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2월) 1.0 → (3월) 0.8 → (4월) 0.7
  -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2월) 0.8 → (3월) -0.1 → (4월) -0.1
- 5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443.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 수출액(억달러): ('25.2월) 402.0 → (3월) 454.1 → (4월) 442.3 → (5월) 443.8
  -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2월) -1.0 → (3월) 1.6 → (4월) 1.9 → (5월) -1.8
- 4월 배출권(KAU24) 종가는 전월대비 하락,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 ▶ KAU24 종가(원/톤): ('25.2월) 9,490 → (3월) 9,010 → (4월) 8,790
  - ▶ KAU24 거래량(천톤): ('25.2월) 1,159 → (3월) 3,049 → (4월) 2,228
- 4월 에너지, 비철금속,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 ('25.2월) -3.0 → (3월) -8.8 → (4월) -19.8
  -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2월) 9.5 → (3월) 10.2 → (4월) -5.9
  - ▶ 농산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2월) 11.0 → (3월) 3.9 → (4월) -1.5

## 4.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5.7

- 2025년 5월중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소비는 양호한 모습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5월	1/4	2/4	3/4	4/4	1/4 <sup>b</sup>	4월 <sup>b</sup>	5월 <sup>b</sup>
제조업 생산	생산지수	-0.4	-3.6	6.5	-2.5	-2.4	-3.0	-11.4	-5.6	-3.9
	출하지수	-4.1	-3.0	1.6	-3.4	-8.3	-6.0	-8.6	-3.6	-6.2
	재고지수	-2.5	0.0	6.8	4.5	9.8	-2.5	-10.0	-8.6	-4.4
소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sup>1)</sup>	3.6	4.4	6.6	1.3	3.8	2.9	8.3	3.8	3.0
	승용차신규등록대수	-6.3	-12.0	-2.0	-17.8	-12.5	8.2	-6.9	8.6	10.9
투자	자본재수입	-2.4	11.4	9.6	-2.3	5.1	-20.0	-18.1	6.0	-8.8
	건축착공면적	66.1	181.8	-33.7	83.1	89.5	147.8	-23.0	-11.1	-18.8
	건축허가면적	98.2	-53.9	-13.4	326.9	-44.4	24.9	-32.6	-93.2	-64.6
대외 거래	수출	24.3	13.5	34.8	85.3	2.7	-15.6	-10.4	12.9	-1.8
	수입	12.2	-16.6	28.4	-6.5	21.5	10.2	-11.9	-7.4	14.0
고용	취업자수증감(천명)	2.3	-0.2	1.9	-0.2	1.4	6.2	3.2	4.1	2.2
	고용률	65.2	65.8	63.3	65.6	65.8	66.0	64.0	65.8	65.7

주: 1) 매장면적 3천m<sup>2</sup>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 (제조업 생산) 2025년 5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축소
- ▶ (소비) 2025년 5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 축소
- ▶ (설비·건설투자) 2025년 5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감소 전환
- ▶ (수출입) 2025년 5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감소 전환
- ▶ (고용) 2025년 6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축소
- ▶ (소비자물가) 2025년 5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소폭 확대(5.5월 2.0% → 6월 2.1%)
- ▶ (주택가격) 2025년 5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상승폭 확대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

		2024년							2025년		
		연간	5월	6월	1/4	2/4	3/4	4/4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sup>1)</sup>		2.4	2.7	2.4	2.8	2.7	2.2	1.9	2.6	2.2	2.0
주택매매가격 <sup>2)</sup>		-5.68	-0.85	-0.32	-2.32	-1.99	-0.79	-0.69	-0.90	0.25	1.45
주택전세가격 <sup>2)</sup>		-4.14	-0.60	-0.65	-2.14	-2.12	-0.37	0.45	-0.27	-0.00	0.3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 05

## 재정통계

### ① 주요 경제지표

- ▶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 ② 세종시 주요 통계

- ▶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 ③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 ▶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 1. 주요 경제지표

출처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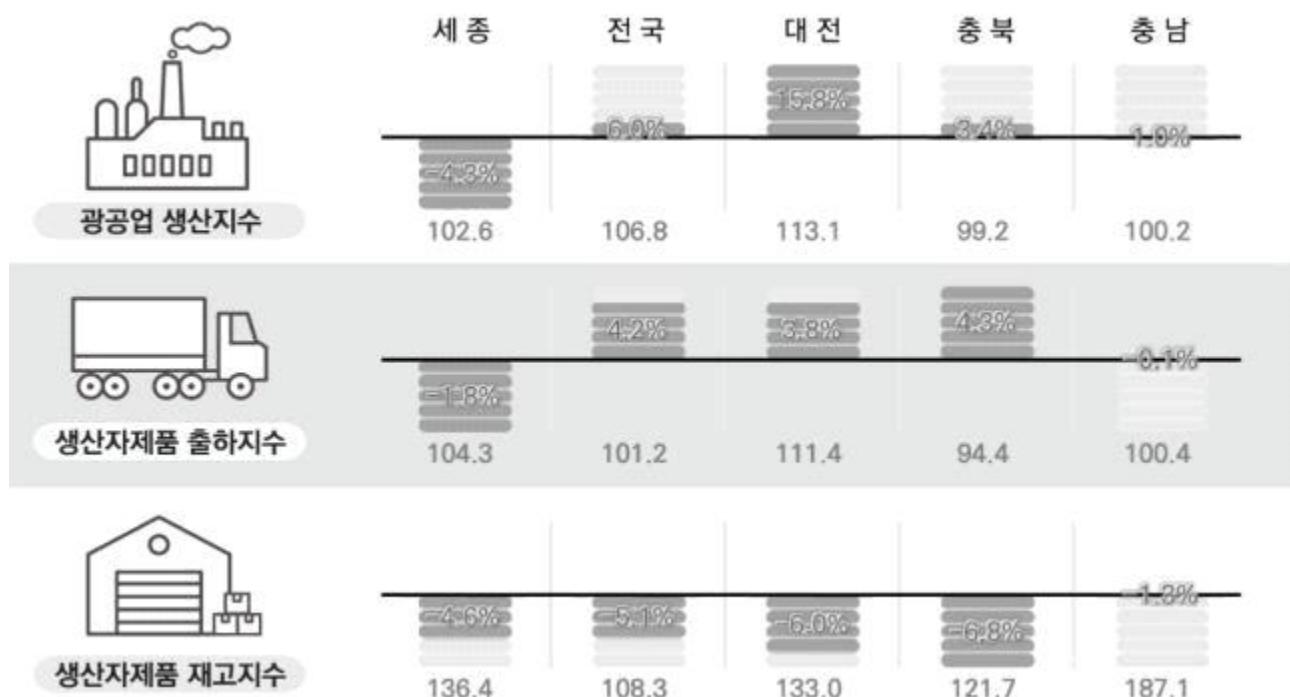
고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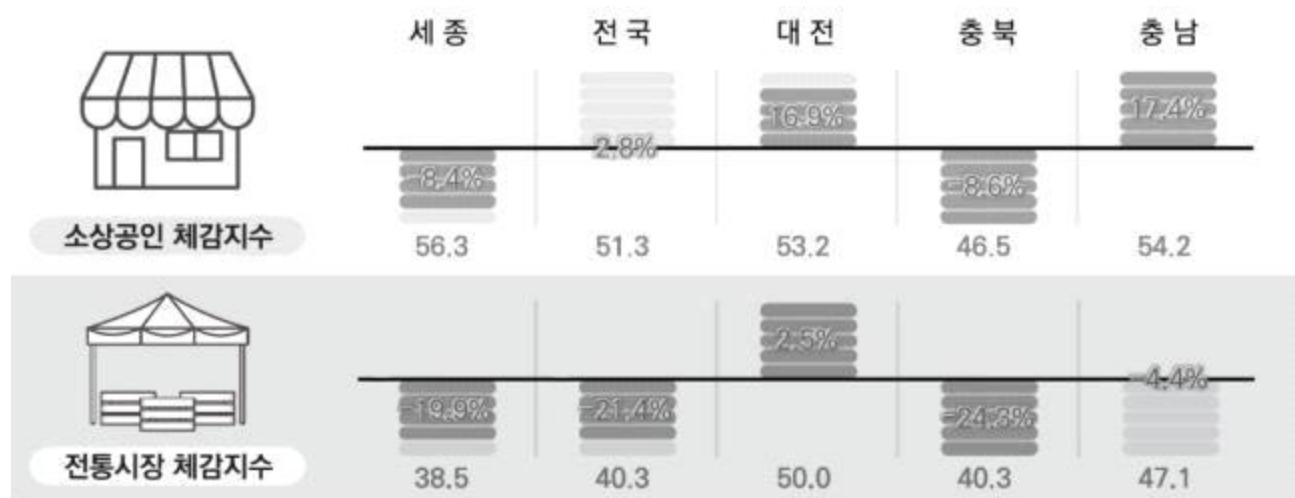
생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전년동월비/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5. 2.



##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전년동월비/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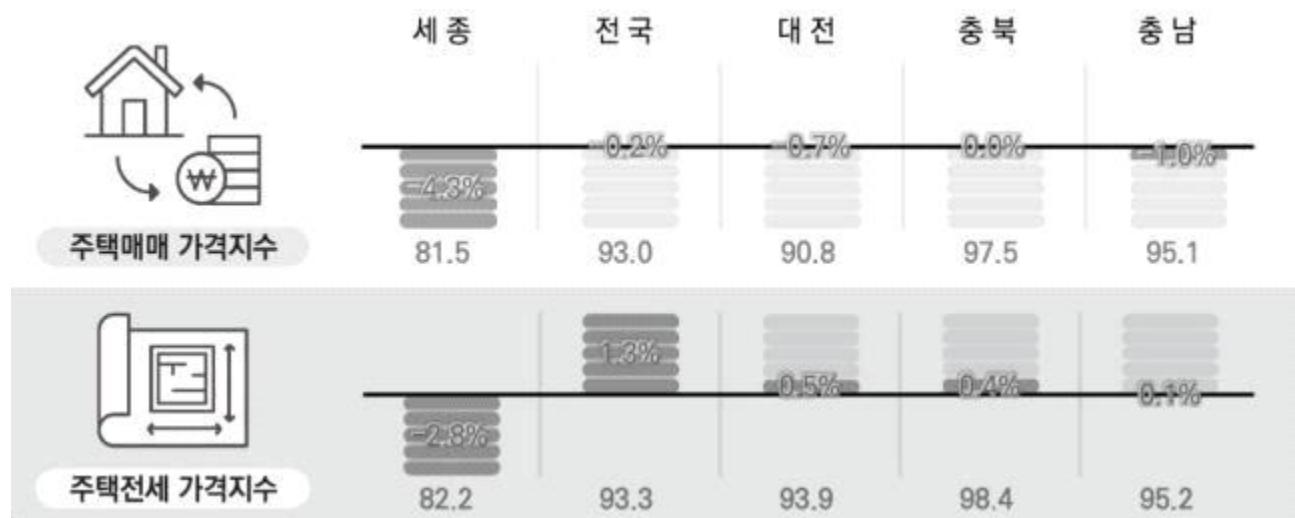
## 소 비 | 전년동월비/2022=100

'25. 2.



## 부동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5. 2.



## 수출입 | 전년동월비

'25. 2.



## 금융 | 전년동월비

'25. 1.



##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25. 2.



## 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 '25년 1분기 세종통계분기보

2025년 1분기(1월~3월) 기준



총인구 (내외국인 합계)

**398,155** 명

내국인 391,812명 / 외국인 6,343명

전분기 대비 0.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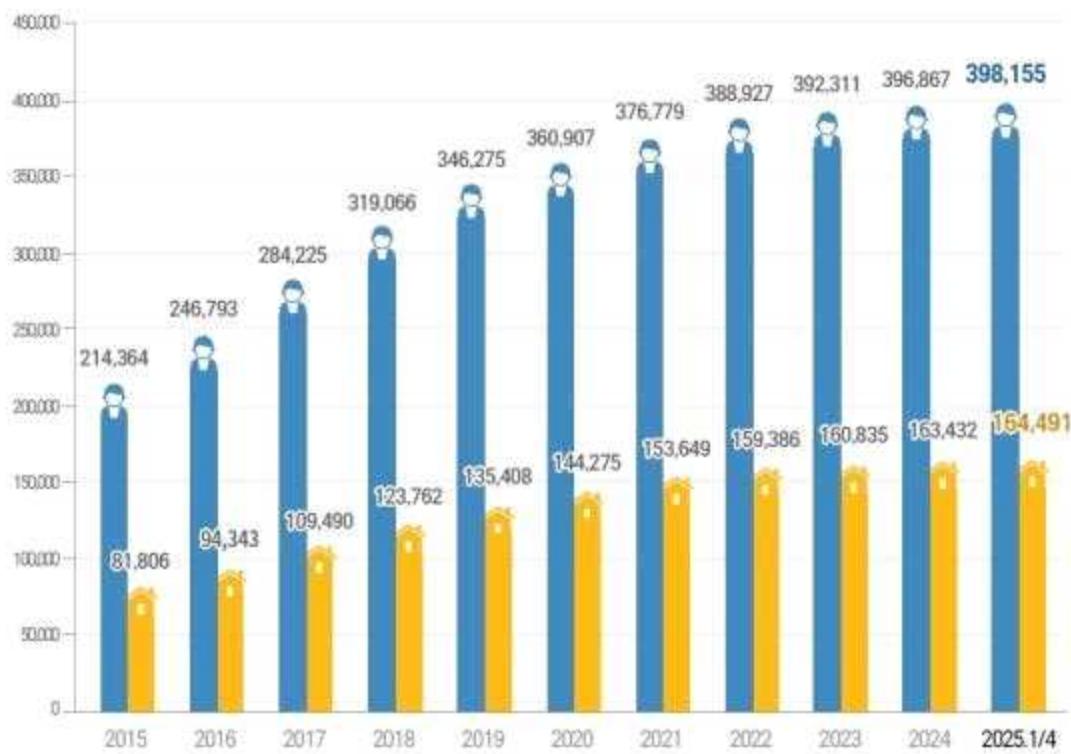
세대수 (외국인 제외)



**164,491** 세대

전분기 대비 0.65% ▲

인구통계



산업



**330,632** 천불



**389,576** 천불



**-58,944** 천불

물 가 · 가 계	비빔밥	치킨	돼지갈비	삼겹살	자장면						
	8,067 원	21,000 원	13,750 원	16,223 원	7,167 원						
	커피	공동주택관리비	택배이용료	미용료	영화관람료						
고 용	3,017 원	182,217 원	5,500 원	16,833 원	13,833 원						
	김치찌개백반	세탁료									
	9,833 원	7,900 원									
재 정 · 금 융 · 보 험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325 천명	214 천명	110 천명	208 천명	6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64세 고용률							
	66.0%	64.0%	3.0%	68.4%							
<p><b>총가계대출 8,836.9 십억원</b></p> <table border="1"> <thead> <tr> <th>Provider</th> <th>Amount (십억원)</th> </tr> </thead> <tbody> <tr> <td>예금은행</td> <td>7,492.4</td> </tr> <tr> <td>비은행예금취급기관</td> <td>1,344.5</td> </tr> </tbody> </table> <p>주택담보대출 6,171.1십억원 기타대출 1,321.3십억원</p> <p>주택담보대출 325.9십억원 기타대출 1,018.6십억원</p>						Provider	Amount (십억원)	예금은행	7,492.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344.5
Provider	Amount (십억원)										
예금은행	7,492.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344.5										

##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 출처: 국토교통부 (단위: %)



##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출처: 국가통계포털 (단위: %)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지	전	답	임야	기타
2025. 1/4	0.194	0.110	0.265	0.532	0.528	0.199	-

##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 출처: 국가통계포털 (단위: %)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통합)	농림	자연환경보전
2025. 1/4	0.213	0.074	0.231	0.370	0.242	0.473	0.534	0.478	0.374	0.058

### 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 시·도 유초등 교육통계, 2024 세종교육통계연보

#### 세종시 학교 총 개황

학교급	설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총계	공립	162	165	167	3,179	3,309	3,329	64,449	66,354	67,188		
	사립	3	3	3	31	29	28	682	687	666		
	계	165	168	170	3,210	3,338	3,357	65,131	67,041	67,854		
유치원	공립	62	63	64	433	434	429	6,311	6,178	5,860		
	사립	2	2	2	7	5	4	111	76	42		
	계	64	65	66	440	439	433	6,422	6,254	5,902		
초등학교	공립	52	53	53	1,587	1,650	1,619	32,230	32,614	32,131		
	계	52	53	53	1,587	1,650	1,619	32,230	32,614	32,131		
중학교	공립	27	27	27	643	658	659	14,809	15,500	15,768		
	계	27	27	27	643	658	659	14,809	15,500	15,768		
고등학교	계	공립	20	20	20	481	519	561	10,913	11,833	13,150	
		사립	1	1	1	24	24	24	571	611	624	
		계	21	21	21	505	543	585	11,484	12,444	13,774	
	일반고	공립	14	14	14	375	413	454	8,953	9,873	11,117	
		사립	1	1	1	24	24	24	571	611	624	
		계	15	15	15	399	437	478	9,524	10,484	11,741	
	특성화고	직업	공립	2	2	2	36	36	37	570	564	623
		계	2	2	2	36	36	37	570	564	623	
	특수목적고	일반	공립	3	3	3	45	45	45	779	788	790
		계	3	3	3	45	45	45	779	788	790	
	자율고		공립	1	1	1	25	25	25	611	608	620
			계	1	1	1	25	25	25	611	608	620
특수학교	공립		1	2	2	35	48	55	186	229	279	
	계		1	2	2	35	48	55	186	229	279	
각종학교	공립		-	-	1	-	-	6	-	-	-	
	계		-	-	1	-	-	6	-	-	-	

주: 학급수는 편성학급 기준임

(단위: 개교, 개, 명)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6,062	6,320	<b>6,332</b>	527	536	<b>528</b>	17,385	18,087	<b>17,789</b>	15,178	16,443	<b>16,432</b>
65	60	<b>56</b>	4	4	<b>4</b>	264	231	<b>226</b>	201	200	<b>227</b>
6,127	6,380	<b>6,388</b>	531	540	<b>532</b>	17,649	18,318	<b>18,015</b>	15,379	16,643	<b>16,659</b>
1,020	1,048	<b>1,054</b>	108	104	<b>100</b>	2,842	2,840	<b>2,653</b>	2,757	2,829	<b>2,540</b>
14	9	<b>9</b>	-	-	<b>-</b>	61	23	<b>16</b>	54	40	<b>31</b>
1,034	1,057	<b>1,063</b>	108	104	<b>100</b>	2,903	2,863	<b>2,669</b>	2,811	2,869	<b>2,571</b>
2,425	2,503	<b>2,437</b>	207	212	<b>208</b>	5,525	5,299	<b>4,833</b>	4,865	5,306	<b>5,412</b>
2,425	2,503	<b>2,437</b>	207	212	<b>208</b>	5,525	5,299	<b>4,833</b>	4,865	5,306	<b>5,412</b>
1,341	1,392	<b>1,362</b>	98	97	<b>94</b>	4,961	5,363	<b>5,420</b>	4,223	4,786	<b>5,102</b>
1,341	1,392	<b>1,362</b>	98	97	<b>94</b>	4,961	5,363	<b>5,420</b>	4,223	4,786	<b>5,102</b>
1,208	1,292	<b>1,356</b>	103	108	<b>110</b>	3,986	4,509	<b>4,809</b>	3,270	3,472	<b>3,328</b>
51	51	<b>47</b>	4	4	<b>4</b>	203	208	<b>210</b>	147	160	<b>196</b>
1,259	1,343	<b>1,403</b>	107	112	<b>114</b>	4,189	4,717	<b>5,019</b>	3,417	3,632	<b>3,524</b>
901	977	<b>1,041</b>	71	73	<b>75</b>	3,322	3,824	<b>4,086</b>	2,711	2,816	<b>2,710</b>
51	51	<b>47</b>	4	4	<b>4</b>	203	208	<b>210</b>	147	160	<b>196</b>
952	1,028	<b>1,088</b>	75	77	<b>79</b>	3,525	4,032	<b>4,296</b>	2,858	2,976	<b>2,906</b>
88	88	<b>89</b>	11	14	<b>15</b>	189	207	<b>236</b>	90	203	<b>173</b>
88	88	<b>89</b>	11	14	<b>15</b>	189	207	<b>236</b>	90	203	<b>173</b>
162	167	<b>163</b>	16	16	<b>16</b>	271	275	<b>270</b>	268	253	<b>250</b>
162	167	<b>163</b>	16	16	<b>16</b>	271	275	<b>270</b>	268	253	<b>250</b>
57	60	<b>63</b>	5	5	<b>4</b>	204	203	<b>217</b>	201	200	<b>195</b>
57	60	<b>63</b>	5	5	<b>4</b>	204	203	<b>217</b>	201	200	<b>195</b>
68	85	<b>108</b>	11	15	<b>14</b>	71	76	<b>74</b>	63	50	<b>50</b>
68	85	<b>108</b>	11	15	<b>14</b>	71	76	<b>74</b>	63	50	<b>50</b>
-	-	<b>15</b>	-	-	<b>2</b>	-	-	<b>-</b>	-	-	-
-	-	<b>15</b>	-	-	<b>2</b>	-	-	<b>-</b>	-	-	-

## 「세종재정」 2025년 두번째

발 행 일 2025. 7.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기획·조정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작 성 김운화 사무관, 문건아 주무관  
신현지 주무관, 이옥선 주무관  
김재원 주무관

전 화 044-300-7531~7535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